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www.customs.go.kr			
보도일시	2022. 9. 14. (수) 15: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배포일시	2022. 9. 14. (수) 10:00	담당부서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담당과장	김원식 과장(042-481-7750)	담당자	고준평 사무관(042-481-7637)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혁신 기반 국민편의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15대 과제 추진
경상북도·한국면세점협회는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 체결

□ 윤태식 관세청장은 9월 14일(수, 14:00~15:00)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개요 >

- **[시간/장소]** 9.14(수) 14:00~15:00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8층 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면세업계*
* (주)호텔신라 · (주)호텔롯데 · (주)신세계디에프 등 12개 면세점
- **[주요내용]**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및 면세산업 발전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책에는 ①국민편의 제고, ②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③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면세점 유형] 1) 시내 면세점 / 2) 출국장 면세점 / 3) 입국장 면세점(중소·중견 기업만 가능)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 요약 >

① 국민편의 제고	<p>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p> <p>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p> <p>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p> <p>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p>
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p>①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p> <p>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기재부 협의)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현재:3.31. → 개선:4.30.)</p> <p>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p> <p>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p> <p>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p>
③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p>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p> <p>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p> <p>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전 발송」을 허용</p> <p>④ 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 2)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p> <p>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p> <p>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p>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 3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 기존에 금지되었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여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1-1]
- '입국장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23.상)하여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1-2]
 - *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관세법상 운영근거 旣마련)
-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1-3,4]

2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1]
 - * [기존] 시내면세점(출입국장 면세점 불가)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 허용 [개선]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가능
-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감안, '22년 특허수수료(22년도 매출분)에 대해 기재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2-2]
 - * 그간 '20년 및 '21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50% 감면조치 旣시행
-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3]
 - * 면세점이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대량구매고객(다이아,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특허(경신)심사 기준'에 반영

3 규제혁신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1]
 - * [기존] 특허 승인 후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 불가 [개선] 특허 승인이 있는 경우,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을 허용
-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여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3-2]
 - * [기존]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물품'에 대해서만 관련 제한 해제(22.3월) [기대효과]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 받아 재고 부담 및 반품시 운송 비용 절감
-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하여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3-5]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3-6]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14:00~15:00) >

-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진행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유전자증폭검사(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 또한,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 >

□ 간담회 이후,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태호)는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시간/장소] 9.14(수) 15:00~15:30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8층 회의실
 [참석자] 관세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강성조), 한국면세점협회장(김태호) 및 면세업계 등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하여 가상공간(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면세점을 운영, 방문 고객에게 면세점 홍보 및 면세품 판매

○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동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가상공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가상공간(메타버스), 지역 관광특화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다양한 메타플랫폼 구축 추진중

○ 관세청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면세점이 ‘지역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붙임 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부.

[붙임 3] 경상북도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 설명자료 1부.

붙임1

간담회 참석자 명단

연번	법인명	직위	성명
1	(주)호텔신라	부사장/면세사업(TR) 부문장	김태호
2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이갑
3	(주)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유신열
4	(주)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	이재실
5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대표이사	김대중
6	(주)동화면세점	사장	김한성
7	(주)시티플러스	사장	김태환
8	(주)그랜드관광호텔	대표이사	조성민
9	(주)양코르면세점	대표이사	권병국
10	듀프리토마스 줄리코리아(유)	회장/대표이사	허균
11	(주)경북공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훈
12	(주)부산면세점	대표이사	이일재
13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홍지원

국제적 면세산업 선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2022. 9.

관계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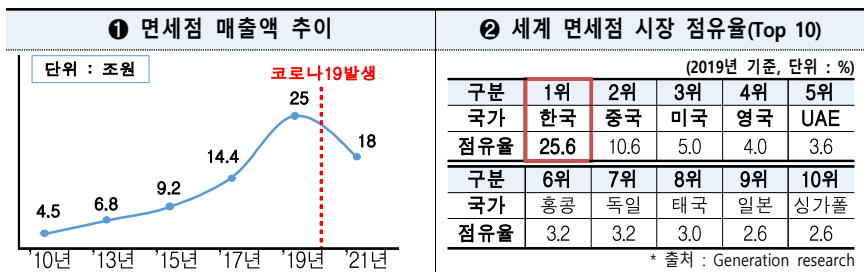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3
III. 15대 주요 과제	4
① 국민 편의 제고	4
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8
③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13
IV. 향후 추진계획	19

I 추진배경

□ (면세산업 중요성) 우리 ①면세산업은 세계시장에서 1위②로 자리매김* 하며 관광·수출·외화획득·고용 측면에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큼

* '10~'19년까지 연평균 21% 매출 성장으로 '19년 매출 2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25.6% 달성



○ (관광진흥) 면세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된 요인*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

*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19년): '쇼핑'이 한국 방문 목적 1위(66.2%), 주요활동 1위(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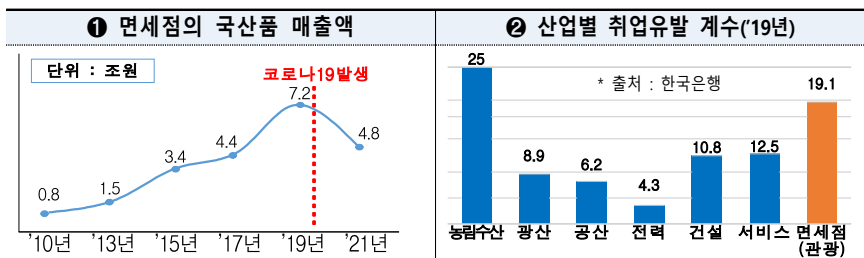
○ (수출확대) 면세점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①국산품 판매는 수출과 동일한 효과**로 수출 확대 및 외화획득에 기여

* 외국인 매출 비중(%) : ('19) 83.7 → ('20) 94.1 → ('21) 95.4 → ('22.1~7) 92.6

** '19년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178억불)은 무선통신기기 수출액(141억불)을 상회

○ (고용창출) 면세점 고용인력은 약 3만5천명*('19년 기준)에 달하며, ②면세점 취업유발계수('19년 : 19.1)는 일반 서비스(12.5)를 상회

* 면세점 직접고용 4,342명, 면세점에 입점 브랜드의 파견인력 30,598명 (한국면세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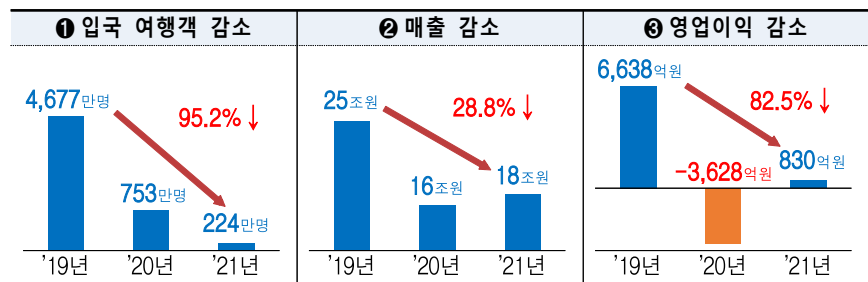
□ (면세산업 동향) 코로나19, 국제경쟁 심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최근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면세한도 상향* 등은 기회요인

* \$600 → \$800 (9.6일 시행),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3.18일 시행)

○ (코로나19) '19년 대비 '21년 ①입국 여행객 감소(△95%)로

②면세점 매출 급락(△29%), ③영업이익 감소(△83%, 주요 5개사)

* '22.1-7월 매출액은 9.8조원으로 21년과 유사한 수준(전년대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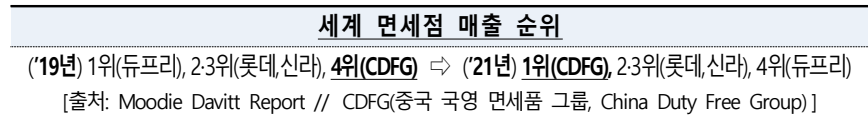
○ (국제경쟁 심화)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 정책*, 유럽·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국제적 면세산업 경쟁 심화

* 1)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톈진, 충칭 등 시내면세점 신설 장려계획 발표('21.1.)

2) 중국 하이난섬 방문 중국인에게 출도 후 6개월까지 면세품 온라인 구매 허용

** 듀프리(스위스): 홍콩('18), 하이난('22), 라기데르(프랑스): 상하이·센젠('20), 하이난('21), DFS(미국): 하이난('21)

- 한국 면세점의 매출 감소와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이탈 가속화* * 한국 시내면세점 철수 : 롤렉스('21), 샤넬('22. 부산·제주), 루이비통('23 예정)



○ (국민불편) 국내 반입을 위해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고,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온라인으로 면세품 구매 불가능**

* 면세품 휴대 부담으로 해외 면세점 이용 // ** 시내면세점에서만 온라인 구매 가능

☞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위기에 직면한 국제적 경쟁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최근 기회요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제적 면세산업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급

II 추진방향

비전	국제적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위 면세산업 육성
목표	1.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 제고 2.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전략	규제혁신 면세점 이용 서비스 고도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15대 주요 과제	1 국민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2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3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④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추진체계 민·官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

III 15대 주요 과제

I 국민 편의 제고

◇ 면세점 온라인 구매 확대, 입국장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을 통해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1.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 (현행) 시내면세점(18개)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금액* 및 비중**은 증가 추세

* 금액(조원): '17) 3.0 → '18) 4.3 → '19) 7.6 → '20) 5.5 → '21) 4.2

** 매출비중(%): '17) 21.0 → '18) 22.9 → '19) 30.6 → '20) 35.2 → '21) 23.6

○ 출·입국장 면세점*은 온라인 판매 불허 등으로 전체 면세점 내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비중은 지속 하락('18년 16.1% → '21년 0.9%)

* 출국장 면세점 23개소, 입국장 면세점 6개소

< 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 (단위: 조원, %)

연도	합계		시내		출국장		입국장		기타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18년	18.9	100	15.3	80.9	3.0	16.1	-	-	0.55	3.0
'19년	24.8	100	21.0	84.6	3.2	13.1	0.03	0.14	0.54	2.2
'20년	15.5	100	14.3	92.6	0.65	4.2	0.01	0.1	0.47	3.1
'21년	17.8	100	17.0	95.4	0.16	0.9	0.005	0.01	0.65	3.7

□ (개선) 점증하는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감안, 면세점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허용

* 시범적으로 시설권자와 면세점간 협회가 진행중인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에서의 시행방안 협의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 시내면세점 온라인 사이트는 출국시간 3시간 전까지만 주문·결제 가능

- [사례] A씨는 사전에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출국 직전에 공항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면세품 구매를 포기하였으나 이제는 공항 이동 중에도 출·입국장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면세품 구매 후 공항에서 수령 가능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온라인 판매 지침」 신설 (’22.12)

2.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 (현행)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음

○ 현행제도의 문제점

- (1) 해외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분실 및 파손 위험 부담
- (2) 여행기간 휴대부담으로 국내 보다 해외면세점 이용유인 증대
- (3) 중국,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도 입국장 인도장 운영중
- (4) 법령상 입국장 인도장 신설 근거 旣마련(’19.12 관세법, ’20.2 시행령 개정)

- (개선) 여행자 편의 제고, 국내 면세점 이용 확대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

○ (1단계)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19. 출입국자 약 190만명)에서 시범운영(’23. 상반기*)

* 면세품 인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 부산항으로 입국시, 국내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

○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공항만으로 확대 논의

- 국민 편의효과, 시범운영 결과, 시설권자 협의*, 중소·중견기업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종합 감안, 도입 여부 및 세부 방안(품목 등) 결정

* 현재 시설권자(인천·한국공항공사)는 관련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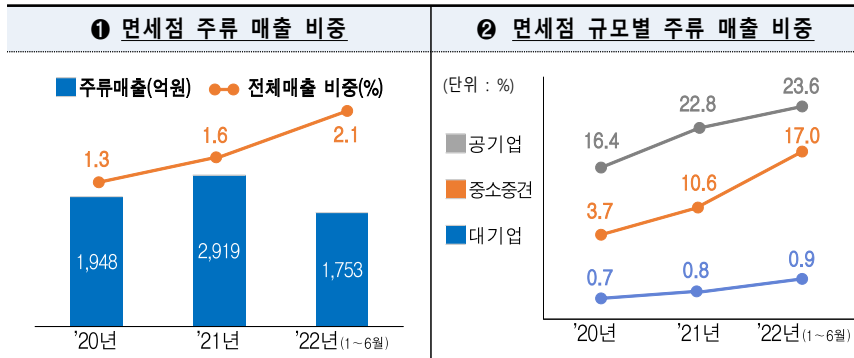
** 인천·김포·김해·대구·무안 공항에서 총 3개 기업[중소(2)·중견(1)]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

- [사례] 서울에 사는 A씨는 부산항을 통해 페리선박으로 일본 여행을 가면서 서울의 시내면세점 및 부산항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일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면세품 휴대 부담이 크게 완화

시행계획 ▶ (1단계) 부산항 시범운영(’23.上) → (2단계) 주요 공항으로 확대

3.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 (현행)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 불가
 -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의 경우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방식*만 허용('20.4~)
 - * 「스마트 오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이동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영업장'이 아닌 단순 인도장이라는 이유로 면세 주류의 온라인 주문·인도 불허(국세청)
 - 현재 ①면세 주류 매출은 코로나 이후에도 증가추세, 특히 ②중소·중견 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매출 비중이 높음



- (개선) 면세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추진(국세청 협업)

■ [사례] L씨는 시내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위스키를 구매할 수 없었으나 시내면세점 온라인 매장에서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해지고 면세한도가 올해 9월 6일부터 2병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리 2병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시행계획 ▶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 추진 ('23.上)

4.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현행) 면세품 구매와 세관신고 등은 종이서류에 기반하여
 - ①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신원확인 방법을 여권으로 한정하여, 여권 未소지 시 시내면세점 물품 구매 불가
 - ② 해외여행객 입국 세관신고 시 면세품 등 구매 내역을 수기작성하여, 물품이 많은 경우 신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
- (개선①)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갖춘 시내면세점에서는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 허용
 - (데이터 연계) 외교부(내국인), 법무부(외국인) DB를 통해 구매자의 여권정보 검증*
 - * 법무부 "HI-Korea", 외교부 "정부24" API를 통해 여권 진위여부 등 조회
 - (데이터 보호)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신원확인 기술*을 활용, 외부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없이 여권정보 확인
 - * DID(Decentralized IDentity) :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관리
- (개선②)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 * 금년 8월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및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신고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시범운영 중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앱 >

- * (운영현황) '22.8.1(월)부터 인천공항(T2), 김포공항 정식 운영
- * (주요기능) ① 입국전·기내에서도 작성 가능 ② 여권촬영으로 개인정보 자동 입력 및 편명·방문국 자동 입력처리 ③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안내 등
- * (계획) 모바일 신고앱 기능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 전용 심사대」 추가 설치

■ [사례] K씨는 예정에 없이 방문한 시내면세점에서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귀국 시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면세범위(800\$) 초과 구매물품을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됨

시행계획 ▶ (개선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 (개선②)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시행 ('23.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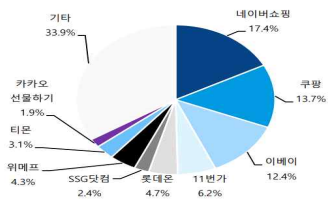
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 온라인포털,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다각화, 특허수수료 및 송객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수익 확대 및 경영 안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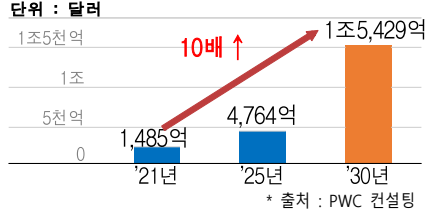
1.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현행) 시내면세점이 「①직접 ②단독 운영」 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타인 소유 인터넷 사이트 활용 불가)
 - * 현재 롯데, 신라, 현대, 동화, 신세계, HDC신라, 그랜드, JTO 등 8개 업체가 운영 중
- 국내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반 오픈마켓 중심으로 성장하여,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한계
- 전 세계 가상공간(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1.5조불 규모로 성장 전망

i) 온라인 쇼핑 업체 시장 점유율 ('20년)



ii) 가상공간(메타버스) 시장 전망 ('21년→'30년)



- (개선①)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모든 시내 및 출·입국장 면세점 대상)

<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사례 >

-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
- ▶ 주요 가상공간(메타버스) 내 면세점 입점: (現) 가상체험만 가능 → (改) 물품 판매 허용
- ▶ 최근 경상북도는 '지역 문화관광 가상공간(메타버스)' 및 '대구경북 신공항 가상공간(메타버스)'에 가상 면세점 입점(가상체험, 판매) 추진중(관세청과 관련 MOU 체결, 9.14일)

- (개선②) 판매 품목·브랜드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사례] C 면세점은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포털과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가상공간(메타버스)에 입점하여 면세품을 판매하고, 유명 브랜드 물품 및 자금력이 부족한 D 중소면세점은 다른 중소면세점들과 비용을 분담, 공동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여 마케팅 및 매출 확대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2.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 (현행)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허수수료 감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 시행 ('22년말까지)

* '20~'21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 총 571억원

** 납부기한은 매년 3.31.이지만 12.31.까지 연장 → '20~'22년 3년간 총 1,293억원 혜택

<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실적 >

구분	'20년('19년 매출분)	'21년('20년 매출분)	'22년('21년 매출분)
이용업체 및 금액	이용 (31) (50%)	이용 (28) (45%)	이용 (27) (50%)
	미이용 (21) (97%)	미이용 (7) (97%)	미이용 (1) (99%)
	업체(개) / 금액(억원)	업체(개) / 금액(억원)	업체(개) / 금액(억원)

- 경영위기 지속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감면 조치가 만료('21년 매출분)까지만 적용됨에 따라 감면 연장*에 대한 업계요청 증대
 - * '22년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23년 납부분)에 대해서도 50% 감면 요청
- 특허수수료 납부기한(3.31.)이 결산시기(3월말)와 같아서 부과고지(3.15.) 시점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업계 불편 가중*
 - * (현행) 세관에 매출 등 잠정액 제출 → 수수료 부과고지 → 잠정납부 → 사후 추가납부·환급

- (개선)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특허수수료의 ①납부 지원책 연장 및 ②납부 시기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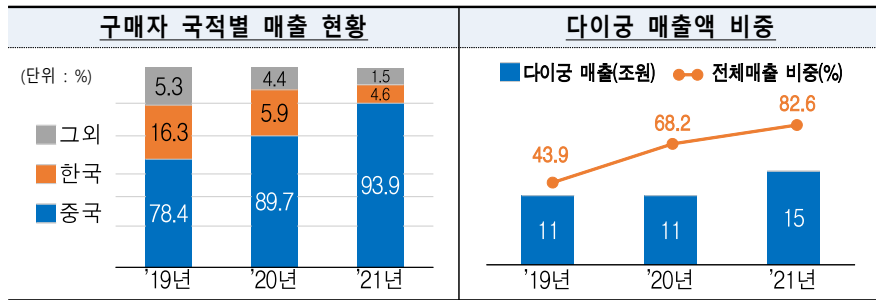
- '22년 매출분 특허수수료('23년 납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협의하에 50% 감면 연장 검토
- ①'23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연장하고, ②납부시기를 개선(매년 3.31 → 4.30) 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 [사례] B 면세점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조치로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23.3월말 납부)를 감면받고, 납부기한도 최대 '23년말까지 연장될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어, 비용 절감 및 자금 유동성의 숨통을 틀 수 있게 됨

시행계획 ▶ 특허수수료 감면 및 납부시기 개선 관련 관세법시행규칙 개정('23.3월0전)

3.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현행) 면세점은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적립금, 할인액 등 포함한 개념)로 지급
 - * 대량구매 고객, 고객을 보내주는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해외여행사 등
-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이궁 등 대량구매고객 의존도가 높아져서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 (매출액의 최대 40%내외)



-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 면세점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국부유출 등 문제* 야기

*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KDI, '22.7.)

□ (개선)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 송객수수료 실태(원인·수수료 수준 등) 및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과도한 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 등에 반영
 -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필요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사항 제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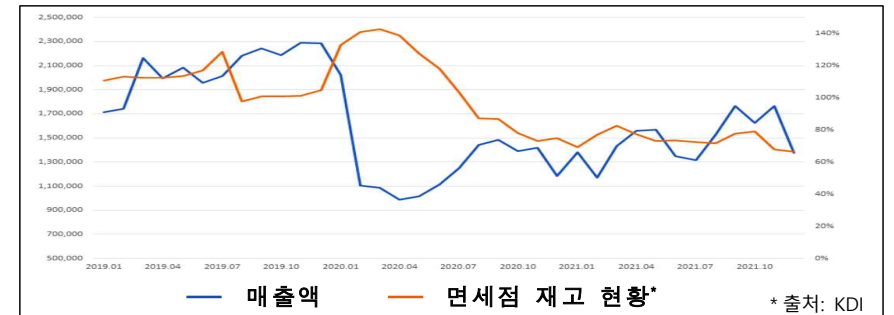
■ [사례]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간 일부 여행사 및 대량구매자에게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하여 경영에 큰 애로를 겪어 왔으나, 특허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을 계기로 송객수수료 지급을 정상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제살깎기식 과도한 "출혈 할인 경쟁"이 근절

시행계획 ▶ 송객수수료 실태 파악 및 특허심사 기준 반영 (23.上)

4.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현행) 과세보류 상태인 면세점 판매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 재고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 또는 폐기만 허용
 -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감소한 반면, 재고 면세품은 급증하는 추세

< 면세점 매출 및 재고 현황 추이 >



* 면세점 재고 현황: ('20.1월경) 코로나19로 급증 → ('20.4월 이후) 내수판매 허용 등으로 감소

- 재고품 처리를 통한 매출 확대, 보관비용 절감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 조치로 재고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20.4.~)

* 면세점 최초 반입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물품

**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실적('20.4.~'22.6월): 3,690억원 / 26,467건

- (개선) 면세점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고시 시점까지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 기한 연장

- 3개월이 경과한 재고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내수판매 처리 허용

< 재고물품 내수통관 절차 >



■ [사례] K면세점은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감소로 급증한 재고품을 외국의 최초 공급자에게 헐값에 반송하거나 반송비용보다 저렴한 물품은 폐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정부의 내수판매 허용조치로 재고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 판매하여 비용피해 최소화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운영 지침」 개정 ('22.11.)

5.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 (현행) 내수판매를 위한 면세품(재고품)이 FTA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나 활용 실적은 미미*

* 수입통관시 FTA 특혜관세 적용 未신청 → 일반 관세율 적용 → 국내판매가 상승

< 내수판매 면세품의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1~6월	합 계
내수판매 전체건수(건)	5,443	16,045	4,959	26,447
FTA 적용건수(건)	2	307	299	608
적용비율(%)	0.04	1.9	6.0	2.3
관세절감액(만원)	20	4,666	4,515	9,201

- 면세점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하였더라도,
 - 당초 반입된 면세품 중 재고 일부만 내수판매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므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특혜관세 신청 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
 - 제품 생산국이 아닌, 제3국의 해외물류기지를 통해 면세품을 구매·반입함으로써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위반 소지
- (개선) 내수판매를 위한 면세품 수입통관시 관세 절감을 위한 FTA 활용방법 홍보·컨설팅 확대 및 「특혜관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홍보) 면세점 업계를 대상으로 내수판매를 위한 면세품을 수입 통관할 때 FTA 특혜관세율 및 신청방법 안내
 - (컨설팅) FTA 특혜관세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고품의 원산지관리·특혜관세 활용방법 컨설팅 확대(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가이드라인) 최초 면세점 반입물품과 내수판매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내수판매 면세품 관리 및 세관심사 기준 마련

■ [사례] K 면세점은 과세보류상태의 재고품을 국내에 일반 판매하기 위해 일반 관세율로 수입통관해 왔으나, 세관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통관한 후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처 확보가 용이해지고 판매량도 급증하게 되었고, 소비자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됨

시행계획 ▶ 내수판매 면세품 특혜관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2.11.)

③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 면세점 영업준비, 재고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신하여 면세점 물류비 부담 경감 및 경영 효율성 제고

1.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현행)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의 경우 특허승인부터 영업개시 까지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영업 未개시 상태에서도 임대료 부담
 - * (특허승인~영업개시) 업체 상황에 따라 최소 1개월~ 최장 6개월 소요

- 특허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업체는 특허장 교부를 받은 후에만 물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개시 준비가 가능
- (개선) 신규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특허승인 후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여, 특허장 교부 즉시 면세점 영업개시 준비 가능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신규면세점 영업준비 절차 >

현행	특허승인 ⇨ 시설구비 ⇨ 특허장 교부 ⇨ 면세품 반입 ⇨ 영업개시
개선	특허승인 ⇨ (예비특허 부여, 면세품 반입) ⇨ 시설구비 ⇨ 특허장 교부 ⇨ 영업개시

■ [사례] '23년 인천공항에 신규특허를 획득한 M 면세점은 신설된 예비특허 제도를 이용, 정식 개장에 앞서 면세점 설치 구역에 판매할 면세품을 미리 반입, 진열을 완비하고 영업개시 이전에 다양한 면세점 홍보를 마친 상태에서 특허일에 원활한 영업개시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2.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 (현행) 과세보류 상태인 면세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은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先반입 後판매) 가능(일부 예외**)

-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창고 반입 후 매장으로 반출 규정
- **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물품에 대해서는 「선판매 후반입」 허용(’22.3~)

- 동일모델 내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면세점의 면세품 ‘先반입 後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 (예) 의류·패션 품목: 1개 물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크기·색상 제품 입고 필요
- 일반적으로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先반입 後판매 제도’하에서는 면세점을 통한 판매가 불가

- * (예) 한류 열풍 관련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 (개선)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

- 면세점은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면세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 즉시 구매자에게 인도 가능
- 면세점은 미판매된 재고품을 통상 공급업체에 반품하여 왔으나, 판매 후 반입 허용시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 면세품 판매 후 반입 제도 확대방안 >

현행	물품반입	⇨	창고보관	⇨	판매	⇨	물품반출	⇨	인도장 인도
개선	판매	⇨	물품반입	⇨	창고경유	⇨	물품반출	⇨	인도장 인도

- [사례] A 면세점은 기존에 판매가 불확실한 아이돌그룹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왔으나, ‘면세품 판매후 반입 제도’ 전면 허용으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아이돌 그룹의 신규앨범 및 한정판 티셔츠를 외국 팬들로부터 예약 주문 받은 후 제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인도함으로써 재고부담 경감 및 매출 증가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3.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 (현행)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재고 면세품의 판매 지원을 위해, 대량판매 재고품은 「구매자 출국전 발송」*을 한시적 허용(’21.1~)

- * 출국시 1회 배송 원칙 → 출국전 수차례 배송 허용(발송신청 익일부터 2개월간)

○ 다만, 면세품의 국내유입 방지 등을 위해 수출인도장을 통해서만 발송이 가능하여,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까지 운송비 부담 발생*

- *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까지 운송비용, 수출인도장 임대료 및 보관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인도장 이용실적 미미

< 면세품 수출인도장 제도 >

- (개념) 현장인도 면세품과 대량 판매된 재고면세품의 국내유입 방지 및 해외 반출절차 지원을 위해 신설(’19.11~)
- (위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에 위치한 ‘AK인천국제물류센터’ 건물 3층(제5입시통물창고)
- (요건) 면세점이 관할세관장에게 사전에 ‘수출인도장 이용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구매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실적) 총 634 건 / 2.7억불(’19.11월~’22.6월)

□ (개선) 물류절차 간소화를 통한 면세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수출인도장 대신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출국전 발송」 허용**

- * 국내 면세점들의 판매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등 위치)
- ** 면세품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면세점이 선적지까지 책임 운송 조건

현행	대량판매 물품	⇨	통합물류창고	⇨	보세운송	⇨	수출인도장 (출국전 발송)
개선	대량판매 물품	⇨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 [사례] G 시내면세점은 외국인이 구입한 대량구매물품을 기존에는 통합물류창고에서 반출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확인을 거쳐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이제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4. 면세점 One-Stop 물류신고 체제 구축

- (현행) 면세품 무단반출 예방을 위해 재고관리, 판매장↔창고 간 운송 등에 있어 엄격한 감시·통제 절차 유지
 - ① 현재 재고조사 의무 완화 등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운영 중이나,
 - *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해 재고조사 완화,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생략, 담보 생략 등의 혜택 부여
 - 면세점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의 신청 양식 및 시기가 상이하여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 발생
- ② 시내 면세점의 경우, 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으로, 공항 배후 단지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 통합물류창고에서 공항(출국 인도장) 등으로 내국물품을 운송할 때 특허보세구역(면세점) 및 자유무역지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반출신고 필요

< 특허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비교 >

구 분	특허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근거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국물품 반출신고	의무사항	의무사항
반출입 관리 주체	관할세관장	관할세관장

- (개선①)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일괄 신청* 절차 신설
 - * 특허 갱신 신청서에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 여부' 항목 신설
- (개선②) 특허보세구역 시스템 및 자유무역지역 시스템을 연계하여 내국물품 일괄 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 통합물류창고에서 물품반출 시, 법령별 반출신고가 한번에 가능하여 업무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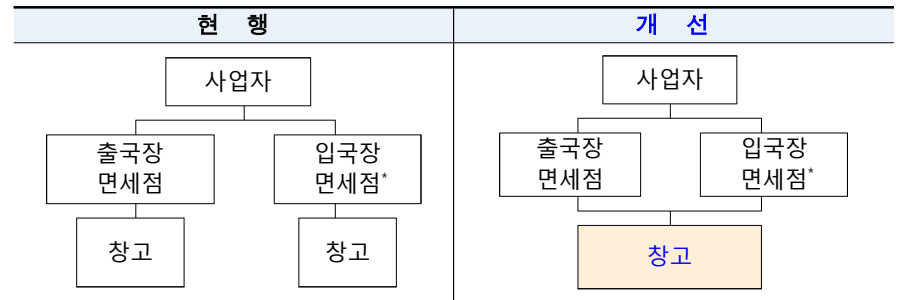
■ [사례] E 면세점은 특허갱신 신청서 한 장으로 면세점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통합물류창고에서 면세품 반출시 관세법 등 관련 법령별로 각각 해야하는 물품반출 신고도 한번에 가능해져서 보세화물 물류비용 절감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및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	--	----------

5.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 (현행) 동일한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세품 보관창고를 출국장·입국장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
 -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4조(시설요건)
- 출장과 입국장 면세점 보관창고를 별도 운영함에 따른 창고 임대료 및 불필요한 재고 부담 등으로 물류비용 증가
- (개선) 중소중견 면세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입·출국장 면세점 창고를 통합한 단일 보관창고 운용 허용
 - * 입국장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에만 특허 부여 → 이에 따라 중소중견업체만 입·출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입·출국장간 물품 이동이 용이한 경우, 보관창고 통합운영 허용

< 출·입국장 면세점 보관창고 통합운영 방안 >



*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중소·중견기업만 운영 가능

구 분	총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기업
면세점	53	21	27	5

■ [사례] ○○공항에서 입·출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A 중소면세점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에서 입·출국장 면세점별로 면세품 보관창고를 각각 임대해 별도 운영해 왔으나 '통합창고 허용'으로 보관창고를 1개만 운영하게 되어 임대료 및 관리비용 절감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	------------------------	----------

6.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 (현행)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에 재반입 후 다시 통합물류창고로 운송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제19조 제4항)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

- 실물 확인이 불필요한 물품*도 일단 시내면세점 반출입 절차를 거쳐야만 통합물류창고에 반입이 가능**

* 컨테이너 봉인 훼손 없이 국내 반품된 물품 등

** 반품 건수(건): ('17) 12,742 → ('18) 18,129 → ('19) 20,278 → ('20) 30,133 → ('21) 20,141

- (개선) 반품 시 시내면세점 경유 없이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허용

- 해외 반품이 최초 판매 시내면세점을 거치지 않고 공항만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되어 물류·행정비용 절감

* 다만, 물품 교체 및 진품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처리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 반품 물류처리 절차 >

현행	개선
▶ 시내면세점 판매 → 통합물류창고 물품 반출* → 공항만 인도장 → 해외 반출 → 반품 → 국내도착 → 시내면세점 반입·반출 → 통합물류창고 물품 반입	▶ 시내면세점 판매 → 통합물류창고 물품 반출* → 공항만 인도장 → 해외 반출 → 반품 → 국내도착 → 시내면세점 반입·반출 → 통합물류창고 물품 반입

* 대부분의 면세품은 공항만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에서 실물 관리

■ [사례] H 시내면세점은 외국인이 대량구매했던 면세품이 구매취소가 되어 반품하는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에 먼저 반입하여 물품 확인을 한 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면세점 경유 없이 통합물류창고로 바로 반품이 가능하여 운송비용 절감

시행계획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2.12.)

IV

향후 추진계획

- (추진체계)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22.10월~)

- (목적) 국내 면세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면세산업 규제완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 논의

- ① 면세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 논의
- ② 면세산업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 논의
* 입국장 인도장 신설,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등

- (구성) 기재부·관세청·국토부·문체부 등 정부부처, 공항만공사·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면세점·여행사 등 업계 대표 등

* [위원장] 관세청장, [간사] 관세청 통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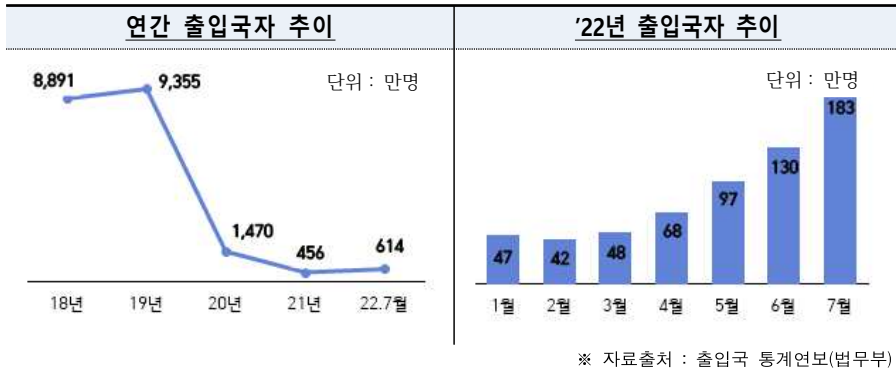
- (운영) 반기 1회(필요시 수시)

- (추진일정) 우선 15대 주요 과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분 야	15대 주요 과제	시행시기
① 국민 편의 제고	1.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22.12월
	2.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23.上
	3.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23.上
	4.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22.12월/'23.上
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1.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22.12월
	2.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23.3월이전
	3.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23.上
	4.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22.11월
	5.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 부담 경감	'22.11월
③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1.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22.12월
	2.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22.12월
	3.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22.12월
	4. 면세점 One-Stop 물류신고 체제 구축	'22.12월
	5.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22.12월
	6.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22.12월

참고1 면세산업 관련 주요 통계

□ 출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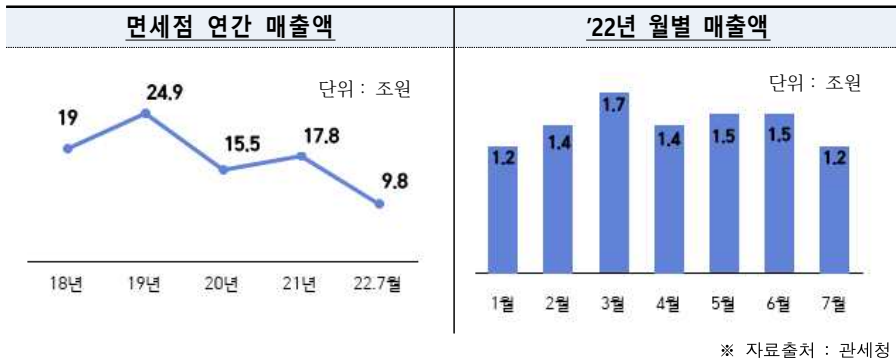


* 연간 출입국자는 '19년도 9,355만명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도에는 456만명으로 95% 수준의 감소율을 보임

** 입국 시 격리해제 등에 따라 '22년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①입국 전 PCR 검사 폐지, ②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③면세한도 상향(600불→800불) 조치 등을 계기로 빠른 증가세 예상

□ 면세점 매출액 추이



* 면세점 매출은 '19년 약 25조원까지 꾸준한 성장(10~19년 연평균 성장률 21%),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약 15조원(전년도 대비 △37%)으로 감소

□ 면세점 운영현황(총 53개소: 외교관1, 출국장23, 입국장6, 시내18, 지정5)

(단위 : 개수)

구분	운영현황 ('22.7월 기준)	
면세점 (48)	외교관(1)	• 서울(1)
	출국장(23)	• 공항(20): 인천(11), 김포(2), 김해(2), 제주(1), 청주(1), 양양(1), 대구(1), 무안(1) • 항만(3): 부산(1), 평택(1), 군산(1)
	입국장(6)	• 공항(6): 인천(2),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시내(18)	• 서울(9), 부산(3), 제주(2), 울산(1), 대구(1), 청주(1), 수원(1)
제주 지정면세점(5)	• 공항(1): JDC(제주공항) • 항만(3): JDC(제주항 1점·2점), JTO(성산포항) • 시내(1): JTO(중문)	

□ 세계 면세점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별 순위						주요 기업별 순위					
[단위 : 점유율(%)]											
구분	'15	'16	'17	'18	'19	구분	'17	'18	'19	'20	'21
1위	한국 (14.4)	한국 (17.2)	한국 (17.9)	한국 (22.3)	한국 (25.6)	1위	Dufry (스위스)	Dufry (스위스)	Dufry (스위스)	CDFG (중국)	CDFG (중국)
2위	중국 (7.3)	중국 (7.4)	중국 (8.4)	중국 (9.4)	중국 (10.6)	2위	Lotte (한국)	Lotte (한국)	Lotte (한국)	Lotte (한국)	Lotte (한국)
3위	미국 (6.2)	미국 (6.2)	미국 (6.1)	미국 (5.7)	미국 (5.0)	3위	Lagardere (프랑스)	Shilla (한국)	Shilla (한국)	Shilla (한국)	Shilla (한국)
4위	영국 (5.5)	영국 (5.2)	영국 (4.7)	영국 (4.5)	영국 (4.0)	4위	DFS (홍콩)	CDFG (중국)	CDFG (중국)	Dufry (스위스)	Dufry (스위스)
5위	독일 (4.6)	독일 (4.5)	독일 (4.2)	UAE (3.7)	UAE (3.6)	5위	Shilla (한국)	Lagardere (프랑스)	Lagardere (프랑스)	Lagardere (프랑스)	DFS (홍콩)

※ 자료출처 : Generation Research

※ 자료출처 : Moodie Davitt Report

* '19년도까지 최근 5년간 세계 면세점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대한민국 (코로나19 이후 '20년부터 국가별 순위는 미발표)

** 중국의 면세점공기 정책으로 국영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20년도 이래로 세계 면세기업 매출액 순위 1위를 차지(롯데, 신라 면세점 2, 3위)

□ 내·외국인별 면세점 매출액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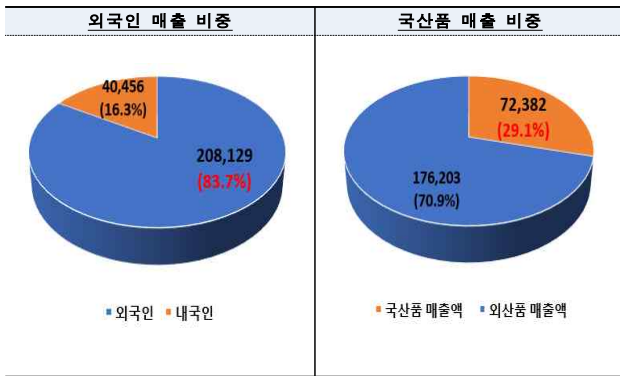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1~7월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합계	189,602	100	248,585	100	155,052	100	178,334	100	97,984	100
외국인	150,004	79.1	208,129	83.7	145,855	94.1	170,054	95.4	90,717	92.6
내국인	39,598	20.9	40,456	16.3	9,197	5.9	8,279	4.6	7,268	7.4

□ 면세점 국산품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1~7월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총 매출액	189,602	100	248,585	100	155,052	100	178,334	100	97,984	100
국산품 매출액	59,584	31.4	72,382	29.1	42,155	27.2	48,537	27.2	19,708	20.1

<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및 국산품 매출 비중('19년) >



붙임3

경상북도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 설명자료

